

2023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

2023년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1. 30.

종로구청



1. 2023년도 융자규모 : 총 2억원

2. 공고기간 : 2023. 11. 30.(목) ~ 12. 13.(수)

3. 융자대상 및 조건

- 융자대상 :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(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급식소)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

구분	대 상	융자한도액	융자 이율	융자기간 및 상 환 방 법
시설 개선 자금	· 식품제조업소	1억원	연2%	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
	· 일반·휴게·제과점·위탁집단급식소 영업	1억원	연2%	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
	·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지원	2천만원	연1%	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
육성 자금	· 모범음식점	5천만원	연2%	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

※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로 함

※ 제외대상

- 단란주점, 유흥주점, 혐오식품 취급업소(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)
-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
-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(업소수와 무관)

○ 사용용도

- 시설개선자금 :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 구입 설치
- 육성자금 : 영업장 시설개선 및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(모범음식점만 지원 가능)
※ 인건비, 임대료(보증금),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

○ 융자금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

-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
-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 변경한 경우
-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
-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
-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

4. 융자 취급은행 : 종로구 소재 우리은행지점

5. 융자신청 :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

○ 신청기간 : 연중(자금 소진 시까지)

○ 구비서류

- 공통

-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, 사업이행확약서
- 영업신고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
(시설개선자금)

-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(별지 제3호 서식)
- 세부견적서 및 영업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

(모범음식점육성자금)

-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(별지 제7호 서식)
- 모범음식점지정증

6. 신청방법 : 구비서류 지참하여 우리은행의 심사확인 후 접수처에 제출

※ 서류 작성 전에 보건정책과에 신청 가능 여부 문의 바랍니다.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(☎ 2148-35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